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5093132 부당이득금 반환

원 고 [redacted]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변 론 종 결 2016. 3. 30.

판 결 선 고 2016.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물 관리, 청소 용역, 경비 용역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redacted]구 [redacted]가에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의 위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6

받은 [redacted]시 [redacted]구청에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호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구 지방세법은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그 사실을 모르고 종업원이 50명 이하로 된 후에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계속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원고는 경정절차를 통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 3년에 해당하는 2012. 2. 귀속분부터 2013. 6. 귀속분까지의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합계 21,234,06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사업장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면세점에 해당하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원고가 납부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중 경정청구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0. 2. 귀속분부터 2012. 1. 귀속분까지의 지방소득세 31,299,560원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3,5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6

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등 참조).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고,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이다(구 지방세법 제99조, 제100조 제1항). 이처럼 종업원 수와 급여 총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짐에도 원고가 종업원 수를 잘못 기재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신고행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용무